

현대건설 기업지배구조 헌장

현대건설은 인간존중(人間尊重)과 기업보국(企業保國)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갈 선도 건설기업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의 기업지배구조는 독립적인 이사회와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가치창조경영 · 글로벌미래경영 ·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중시하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근간으로 한다.

제 1 장 주주

1.1 주주의 권리

- 1) 주주는 현대건설(이하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아래와 같은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3) 주주는 자유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 등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2) 회사는 소수주주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등의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
- 3)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 1) 주주는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2 장 이사회

2.1 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목표와 전략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 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회사 경영상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등 재무사항
 - 회사 경영 및 기타 활동상 중대한 위험 관리
 - 회계 및 재무통제
 - 회계 및 재무 감사
 - 주식 발행 및 주주배당정책
 - 기업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
 - 법령 및 내부통제, 윤리규정 준수
 - 환경 및 대체에너지, 물 관리, 원자력 등 내외부 주요 환경 이슈 해결
 - 사회공헌 및 공동체 발전
 -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 사항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이사회의 구성

- 1)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2)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만약 CEO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할 경우,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독립이사 중 1인을 선임(先任) 독립이사(Independent Lead Director)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 3)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4) 선임독립이사는 CEO 경영활동 감시, 사내이사와 독립이사 의견 중재, 독립이사 주재정기회의 소집 및 독립이사 의견 수렴 및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2.3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된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최소 90% 이상의 회의에 직접 출석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정기이사회 소집은 최소 일주일 전 이사들과 관련 인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비정기이사회 소집은 최소 하루 전 대상 이사들과 관련 인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3) 이사회는 회의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내용을 녹취한다. 회의록에는 이사가 직접 서명을 하며 회의록과 녹취자료는 장기간 유지·보존한다.
- 4)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 감사위원회
 - 회사 회계와 업무 및 재무상태 감사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 추천
 - 이사 선임배경, 추천인,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의 이해관계 확인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 지속가능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
 -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검토/승인
 -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
 - 보상위원회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 6)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이사회는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별 핵심 주제에 대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4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 1)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책임을 준수하는 자세와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혜와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 2)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 3)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겸직의 수를 최대 4개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이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4)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5) 독립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및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최근 5년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미국 NYSE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보다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사 독립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는 독립성 결정에 있어 국내외 환경과 회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이사가 지난 5년간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독립이사 제외)
 - 이사의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또는 이사의 직계가족이 회사 또는 자회사로부터 연간 6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이사가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이사가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6)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5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2)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며,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3) 대표이사 이외의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4) 독립이사 후보는 독립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독립이사 후보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일괄 선임 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선임한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임기가 만기된 독립이사의 재선임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재선임된 독립이사의 임기는 동일하게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6)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의 구조,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균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적 상보성(the complementarity of skills)을 확보하여 사업 결정 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국가, 문화적 배경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 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또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향상함으로써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성별: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양성 기회평등의 원칙 반영
 - 연령: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경륜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증진
 - 인종: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인종적, 문화적 및 민족적 다양성 추구
 - 국적: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국적, 출생국가 및 문화적 배경의 이사 후보 발굴
- 8) 회사는 올바르게 시의 적절한 사업 결정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배경 등 직무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 의 직무적 상보성을 확보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반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종 직무 경험을 보유한 이사 비율을 이사회 의 과반수 수준까지 확보하여 운영한다.

2.6 이사의 책임과 의무

- 1) 이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중의와 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한다.
- 2)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현대건설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윤리규정에 명시된 행동 준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나 경영임원에 대해서도 행동 준칙의 준수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이사회나 경영임원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선임독립이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수행했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4)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5) 회사는 이사의 경영참여 촉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2.7 독립이사의 역할

- 1) 독립이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며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 2) 독립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위 경영진의 배석 없이 사업장의 관리장과 면담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지불한다.

- 3) 이사회 의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독립이사 중심의 회의를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이사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내이사 또는 집행임원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8 평가 및 보상

- 1) 회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이사회 평가제도)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2) 이사회는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회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3)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연도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사들은 이사회와 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지정된 양식의 평가서를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는 연간 평가서를 정리·요약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매년 1월 이사회 및 위원회 토의 시 활용한다. 이사회는 해당 평가서를 이용하여 차기 연도의 이사회 운영 개선과 보상에 활용한다.
- 5) 독립이사 보수는 이사와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정렬시킬 수 있는 방식을 호선한다.

2.9 이사의 교육

- 1) 회사는 독립이사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집중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 독립이사 임면 후 해당 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전반 경영활동 파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회사의 장기비전 달성, 주요 전략, 내부 주요 재무 및 회계 사안, 내부 통제 및 윤리 규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3)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 2회 이상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하며,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2) 감사위원회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적법성 감사
 - 기업 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 기업 내부감사 검토 및 통제
 -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외부감사인인 선임 및 해임 관련사항 주주총회에의 보고
 - 외부감사인과 이사회 의사소통 중재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외 경영진단활동 사전 승인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3.2 외부감사인

-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외부감사인은 외부 감사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4)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을 제외한 회사의 경영진단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5)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발생한 회사와의 금전거래내용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 1) 회사는 직원·고객·채권자·공급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히 해결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2)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 3)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5장 공시

-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2)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3)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내용과 이사회 출석률·약력·재임기간·겸직·보수·주식 보유 현황 등 일반 지배구조 현황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분기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하도록 한다.